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중 개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상이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갱신 또는 기간연장) 수수료 삭제 (안 제2조 별표의 11, 12)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삭제(안 제2조 별표의 44, 47)
- 다.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삭제 등(안 제2조 별표의 55)
- 라. 「낙시 관리 및 육성법」,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수수료 신설 (안 제2조 별표의 183, 184, 185, 186)
- 마.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양식산업이 「양식산업 발전법」(2019. 8. 27.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양식산업 관련 수수료 삭제, 신설(안 제2조 별표의 79, 187~211)
- 바. 개별법 명칭 변경, 조문 변경에 따른 수정(안 제2조 별표의 18, 29, 35, 36, 37, 38, 115, 130, 148)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9. 4. ~ 10. 14.)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

현행		개정안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삭제	삭제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삭제	삭제
18. 「공인중개사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필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8.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필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3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은 무료)	1건당 800원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현행		개정안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삭제	삭제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삭제	삭제
55.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삭제	삭제
79.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 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삭제	삭제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현행		개정안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현행	개정안	
신설	183.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낙시터업 허가(변경) 수수료	1건당 5,000원
	184.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낙시터업 등록(변경) 수수료	1건당 5,000원
	185.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낙시터업 승계사실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86.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87.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9,000원
	188.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89.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90.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91.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92.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당 800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수수료		
	193.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94.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195.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96.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 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 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197.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98.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99.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른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200.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201.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및 육상 등 내수양식업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202.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 양식업 신청수수료	1건당	2,000원
	203.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204.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205.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1건당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허가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800원
		206.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양식업 휴업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207.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허가양식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08.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양식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209.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210.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211.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76